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9
------------	-----

제출년월일 : 2005. . .
제출자 : 영주시장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주시세 감면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방세 감면조례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17조)

3. 자치법규안 : 덧붙임

4. 신·구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재래시장 관련 지방세감면조례 일부개정표준(안)【도 재정파-7554(2005.04.27)】 1부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을 각각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대비 표

【영주시세감면조례】

현 행	기 정	개정사유
<p>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제17조(시장점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점비사업시행구역안</p> <p>.....</p> <p>.....</p> <p>.....</p> <p>1. 시장점비사업시행</p> <p>.....</p> <p>.....</p> <p>2. 시장점비사업시행</p> <p>.....</p> <p>.....</p> <p>.....</p>	<p>관련법률의 명칭변경 으로 관련조문 정비</p>

‘위대한 경복 함께 뛰는 300만’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래시장 관련 지방세감면조례 일부개정표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과-470(2005.03.09)호와 관련입니다.

2.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방세감면조례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3.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볼입과 같이 지방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을 통보하오니, 조례개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 1부, 끝.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포함시장(포항시재정관리과장), 경주시장(세무과장), 김천시장(세정과장), 안동시장(세정과장), 구미시장(세무과장), 영주시장(세무과장), 영천시장(세무과장), 상주시장(세정과장), 문경시장(세무과장), 경산시장(세무과장), 군위군수(재무과장), 의성군수(재무과장), 청송군수(재무과장), 영양군수(재무과장), 영덕군수(재무과장), 횡도군수(재무과장), 고령군수(재무과장), 성주군수(재무과장), 칠곡군수(세무과장), 예천군수(재무과장), 통화군수(재무과장), 을진군수(재무과장), 울릉군수(재무과장)

04/27 목 14:55:51 | 제작자: 박시홍 | 파일명: 지방행정사무처_재정과_2024-04-27_145551.dwg

현조자 지방환경조사 전기부

시행 재정과-7554 (2005.04.27.) 접수 세무과-3110 (2005.04.28.)
우 702-702 대구광역시 특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3689 / 전 fax (053)950-2319 / name@gb.go.kr / 품개

○○시·군·구 감면조례개정안

현 행	개 정
<p>제00조(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u>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u>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u>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제0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u> 2. <u>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u>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5.1.14 법률 7335호]

- 제18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① 시·도지사는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의 소유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이 선정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구역의 선정·변경·공고 및 지원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